

임용결격 사유

「인사규정」 제17조(임용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8.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
9. 병역을 기피한 자
10. 외국인 혹은 복수국적자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 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 및 회사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
14. 「경비업법」상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15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16.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